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74

발의연월일: 2022. 6. 21.

발 의 자:소병훈·권칠승·김두관

김승남 • 민형배 • 송옥주

용혜인 • 이동주 • 이정문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노인·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.

그런데 단순히 시설·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,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관리가 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3 및 제12

조의4 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3(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)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4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) ① 시장등은 제 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노인 및 장애인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어린이 및 노인·장애인 교통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)
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이 법
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12조의3(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) ① 시장등은 제1 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
<신 설>	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 제12조의4(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) ① 시장등은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노인 및 장애인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노인 보호구역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

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